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22 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 강명구·최수진·조경태

서명옥・권성동・구자근

이허승 • 박덕흠 • 임종득

배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.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%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. 특히,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%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. 그러나, 결산배당과 달리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.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65조의12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5조의12제1항 중 "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"를 "이사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말일부터"를 "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20일"을 "1개월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정관"을 "정관 또는 이사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5조의12(이익배당의 특례) ①	제165조의12(이익배당의 특례) ①
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	
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사업연도 중 <u>그 사업연도</u>	<u>이사회</u>
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월 말	
<u>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</u> 결	
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(이하	
"분기배당"이라 한다)을 할 수	
있다.	
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<u>제1</u>	② <u>사업</u>
<u>항의 말일부터</u> 45일 이내에 하	연도 개시일부터 3월, 6월 및 9
여야 한다.	월의 말일부터
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	③
이사회 결의일부터 <u>20일</u> 이내에	<u>1개월</u>
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정관</u> 에	<u>정관 또</u>
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	<u>는 이사회</u>
우에는 그에 따른다.	
④ ~ ⑨ (생 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